

2003. 3. 28(금)
제88회임시회제4차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총 무 사 회 위 원 회

- 제천시 읍면 복지회관운영조례제4조(위원회)읍면 운영위원회는 읍면 개발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라는 규정을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장 제15조, 제16조 규정에 의한 주민자치 위원회로 대행하려 함은 위원회의 기능이나 성격상 적절하다 할 것이며, 2003. 3. 13. 제천시조례규칙심의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는등 적법하게 성립되었음.

나. 행정적 검토

- 구 읍면개발위원회조례 제2조(기능)7호에 복지회관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 하도록 규정되었지만,
-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의) 제16조(기능) 제1항 2호에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대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원의 책임소지를 분명히 하고, 복지회관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기 조례개정 시에는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

5. 소수의견

“ 없 음 ”

6. 토론요지

“ 없 음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